

방송국 규정

제정 1998. 03. 01 개정 2013. 03. 01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교육방송을 통하여 학생들의 정서를 순화하고 교양을 높이기 위한 경동대학교의 방송국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방송국은 경동대학교 KDBS방송국(이하“방송국”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3조 (업무) 방송국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교내 방송
2. 방송제, OS(Open Studio)등 방송국 주최 행사
3. 기타 방송국 운영에 관한 업무

제4조 (구성) 방송국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방송국의 방송국장은 총장으로 한다.
2. 방송국에 주간교수를 두며 총장이 임명한다.
3. 방송국에 기술부, 제작부, 아나운서부, 보도부를 둔다.

제5조 (부서업무) 방송국의 각 부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1. 기술부 : 방송기기의 조정, 작동 및 유지보수 기타 기술적 분야
2. 제작부 :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과 연출
3. 보도부 : 뉴스, 공지사항 등 취재 및 보도
4. 아나운서부 : 교내 방송, 프로그램 진행

제6조 (방송국원) 방송국원의 구성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방송국원은 실무국장 및 실무부국장, 부장, 정국원 및 수습국원으로 한다.
2. 실무국장은 본 대학에서 4개 학기를 수료한 학생으로 주간교수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3. 각 부서는 필요에 따라 부장을 둘 수 있으며 실무부국장과 부장은 주간교수가 임명한다.
4. 수습국원은 1학년 학생 중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선발하며, 1학기간의 방송국 교육과정을 이수 후 정국원으로 임명한다.

제7조 (예산 및 결산) 방송국의 예산 편성과 결산에 따른 회계의 원칙은 교비 회계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8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지침을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